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0. 16 선고 2023가단16896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피고B 주식회사

변론 종결2024. 7. 10.

판결 선고2024. 10. 1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3. 7. 31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,
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주장

가. 원고는, ① 2019. 4. 9. D으로부터 D이 C 주식회사(이하 'C'라 한다)에 대하여 가지는

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4,000,000원을 양수하였고, ② 2020. 1. 13. E로부터 E가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5,000,000원을 양수하였다(이하 D, E가 원고에게 양도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합하여 '이 사건 피보전채권'이라 한다).

나. C는 2018. 4. 10. 원고에 대하여 건물명도(인도) 소를 제기하였고(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단6861호), 위 법원은 2019. 5. 16. '피고는 원고에게 6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. 4. 2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8. 4. 1.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선정자 F으로부터 인도받을 때까지 월 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'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, 위 판결은 2020. 6. 30. 그대로 확정되었다(별지 기재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. 이하 '판결금 채권'이라 한다.).

다. 피고는 2023. 7. 31. C로부터 판결금 채권을 양수하였고, C는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계약'이라 한다).

라.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한다.

2. 판단

갑 제6, 7, 10,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D, E로부터 D, E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, 갑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D, E가 C에 대하여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, 갑 제16, 17,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 내지 무자력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.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김성대

별지